

감정평가서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경환
건명	김성룡 소유물건 (2024타경74139)
감정서번호	A1N2240619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

지사장 장 세 재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우병수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 지사장 장세재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이억오천사백만원정 (₩254,000,000.-)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경환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수원지방법원 경매1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성룡 (2024타경74139)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06.20	2024.06.19 ~ 2024.06.20	2024.06.20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이	구분건물	1세대 하 여	- 백	254,000,000
	합계					₩254,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만석공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72- 101 제5층 제504호(구분건물)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경매(2024타경74139)를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음.

3. 실지조사 실시기간, 기준시점 및 기준가치

1)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기준시점

본건의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4년 06월 19일 ~ 2024년 06월 20일로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가격수준 등을 확인하였으며,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06월 20일임.

2)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음.

5.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72-101 통칭 '더원팰리스'			사용승인 일자	2019.04.30		
건물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전체층수	지상 5층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분양면적 (㎡)	전용률 (%)	대지권 (㎡)	용 도 (공부상)
기호	해당 층·호수						
1	제5층 제504호	51.4	4.99	56.39	91.15	29.5933	도시형생활 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제반 공부자료에 의거함.

나. 본건 집합건물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기재내용 및 구두탐문, 현 점유사용부분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후첨 '내부구조도'와 같이 '다락'이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다. 실지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내부구조, 이용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 및 건축물현황도, 인근선례, 탐문조사, 외부관찰 등에 의거하였으므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는 바, 귀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액 결정의 방법

(1) 평가방식은 대상물건의 성격·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비교방식 및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수익방식이 있음.

평가방식	평가방법	평가방법의 적용
원가방식	원가법	원가법이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이 때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공시지가기준법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본 평가에서 구분건물은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용재, 부대설비, 시공정도, 현상 및 인근지역 내 유사 구분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선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상기 방법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액과 다른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본건이 비수익용 부동산이라는 점, 전유부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로 효용을 발생시키는 대상물건의 특성 등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지니므로 건물과 토지가 일체로 거래되어 토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평가목적상 귀 법원의 요청에 의거하여 ‘주거용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산하 한국부동산연구원 발행)에 근거한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표기하였는바, 귀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인근지역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호수	전유면적 (㎡)	거래시점	대지권 (㎡)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공부상 용도
				사용승인일				
a	송죽동 4**-**	제5층 제50*호	69.98	2024.05.09	44.15	283,000,000	4,044,013	다세대 주택
				2018.06.18				
b	송죽동 2**-**	피카소힐 제2층 제20*호	53.005	2024.02.24	32.4	215,000,000	4,056,221	다세대 주택
				2016.07.19				
c	송죽동 4**-**	제이디펠리시티 제10*동 제5층 제50*호	62.91	2023.10.09	33.63	290,000,000	4,609,760	다세대 주택
				2020.01.17				

2) 인근지역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평가 목적	기준시점	평가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사용승인일		
#a	송죽동 2**-**	엘림피렌체 제에이동 제5층 제50*호	62.61	40.26	경매	2024.04.03	299,000,000	4,775,595
						2015.09.1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검토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 가격수준
본건과 유사한 다세대주택 시세는 전유면적 당 4,000,000/㎡ ~ 5,000,000원/㎡ 정도 수준임. (층별, 위치별 효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4) 인근지역 최근1년 경매통계

(출처: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구 분	용 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매각율(%)	매각가율(%)
최근 1년 평균	연립주택, 다세대	22.2	74.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감정평가액의 산출 및 결정

(1) 적용사례의 선정

인근 시세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고 있고 본건과 층별, 위치별, 평형별 효용이 유사하며 건물의 구조와 설비, 관리상태 및 입지조건, 주변환경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에서 비교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사례(c)를 선정함.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거래시점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사용승인일		
c	송죽동 4***-**	제이디펠리시티 제10*동 제5층 제50*호	62.91	33.63	2023.10.09	290,000,000	4,609,760
					2020.01.17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사례로 선정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치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기 선정된 거래사례는 특별한 사정의 개입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시점수정

① 시점수정 기준

ㄱ. 시점수정이란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치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임.

ㄴ. 사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유형적으로 유사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월간동향)의 지역별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해당 분기 가격지수가 미고시된 경우 직전 분기의 가격지수를 적용하였음.

② 시점수정치 내용

지 역	시점수정치	시점수정치 산정
경기 경부2권 (2023.10.09 ~ 2024.06.20)	0.99198	$98.9 / 99.7 \approx 0.99198$

※ 거래시점 : 2023.10.09, 2023년09월 지수를 적용 함

※ 기준시점 : 2024.06.20, 2024년05월 지수를 적용 함

2023.10.09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3년09월) : 99.7

2024.06.20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5월) : 98.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구 분	조 건	격차율(본건/사례)	비 고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1.00	대체로 유사함
건물요인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면적구성 (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 (복도식/계단식) 등	1.00	대체로 유사함
개별요인 (호별요인)	층별효용, 향별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1.08	본건은 사례대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등에서 우세함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등함
누 계 치		1.08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기호	거래사례 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전유면적 (㎡)	산정금액 (원)	결정금액 (원)
1	4,609,760	1.000	0.99198	1.080	4,938,613	51.4	253,844,708	254,000,000

III.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및 결정 내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여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하되,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와 대상 부동산의 제반 특성, 최근 부동산 가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정하게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평가액(원)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72-101	통칭 ‘더원팰리스’ 제5층 제504호	51.4	29.5933	254,000,000
합 계					₩254,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만석공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2019년 04월 30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4호로서
외벽 : 몰탈 위 돌붙임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11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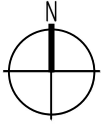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 미상임.
-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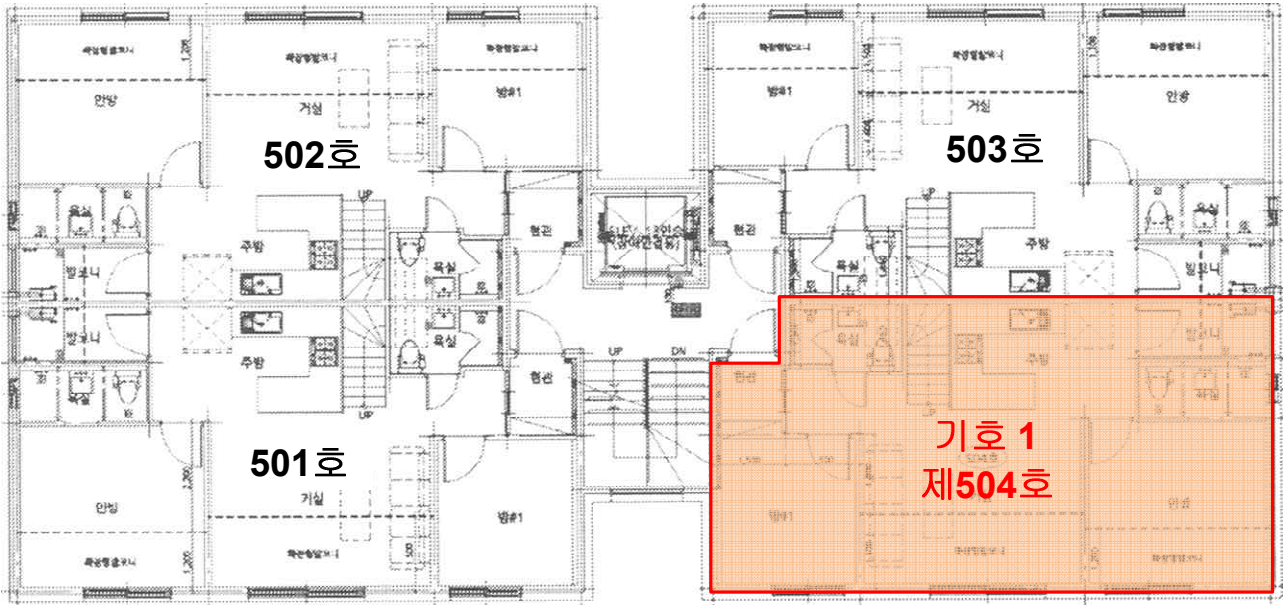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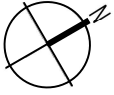
상세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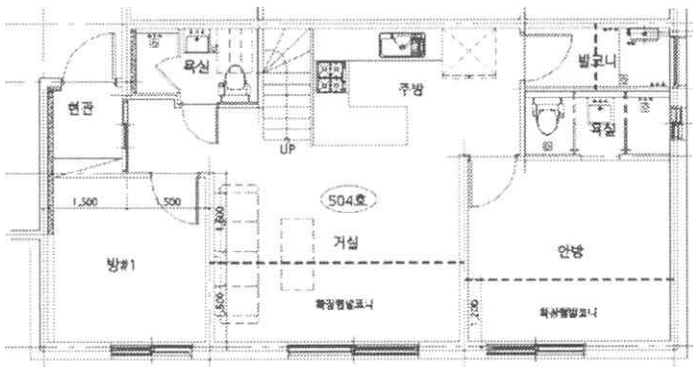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72-101 제5층 제504호
-----	--------------------------------------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건축물 현황도 등에
의거하였으므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제5층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



